

지방공시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시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시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시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조(사무소)②<u>병원</u>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원(이하"지사"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제 3조(사무소)② ----- <u>도지사</u> ----- ----- -----</p>
<p>제10조(임원의 임면)①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u>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u> 도지사가 임면한다.</p>	<p>제10조(임원의 임면)① ----- ----- <u>삭</u> <u>제</u> ----- -----</p>
<p>제16조(이사회)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이사(<u>보건사회국장</u>)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16조(이사회)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기획관리실장</u>) ----- -----</p>